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장 애 인 기 업 활 동 촉 진 법 시 행 령  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 영 (중소벤처기업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의결주문

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1인 중증장애경제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」이 개정(법률 제19505호, 2023. 6. 20. 공포, 2023. 12. 21. 시행)됨에 따라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대상자 선정 및 취소, 서비스의 제공방법을 정하고 업무지원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려는 것임

## 3. 주요내용

가. 업무지원인 서비스 시행의 세부규정 마련(안 제7조의3 신설)

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및 취소, 서비스의 제공방법을 정하고 업무지원의 범위를 구체화함

나.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 업무위탁 근거 마련(안 제11조의 4 개정)

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업무위탁기관을 장애인기업종합 지원 센터로 명시함

## 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 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09. 00. ~ 1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  
-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##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3(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등)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서비스(이하 “업무지원인 서비스”라 한다)는 직업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경제인(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경제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중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의 중증장애경제인을 우대해야 한다.

1. 장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심한 중증장애경제인
2. 여성 중증장애경제인

②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려는 중증장애경제인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중증장애경제인의 사업 내용과 경영 능력 등을 평가하여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시간 동안 제공하고, 그 소요 비용의 일부를 중증장애경제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중증장애경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경우

2. 제공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그 제공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

3. 중증장애경제인이 제3항에 따른 비용 부담을 거부한 경우

4.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중 중증장애경제인의 휴업, 폐업, 영업정지, 도산 및 파산 등 사정변경으로 업무지원인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

⑤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1유형: 업무보조형(중증장애경제인의 부수적 업무 지원)

2. 제2유형: 의사소통형(중증장애경제인의 의사소통 지원)

3. 제3유형: 경영지도형(중증장애경제인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업무 지원)

4. 그 밖에 업무지원인 서비스 범위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 절차 등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의4(업무의 위탁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한다.

1. 법 제10조의3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업무

2. 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에 관한 업무

## 부 칙

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에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 행	개      정      안
<p>&lt;신    설&gt;</p>	<p>제7조의3(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등)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서비스(이하 “업무지원인 서비스”라 한다)는 직업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경제인(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경제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중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의 중증장애경제인을 우대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장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심한 중증장애경제인</li> <li>2. 여성 중증장애경제인</li> </ol> <p>②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려는 중증장애경제인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중증장애경제인의 사업 내용과 경영 능력 등을 평가하여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</p>

무지원인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시간 동안 제공하고, 그 소요 비용의 일부를 중증장애경제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중증장애경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경우

2. 제공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그 제공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

3. 중증장애경제인이 제3항에 따른 비용 부담을 거부한 경우

4.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증장애경제인의 휴업, 폐업, 영업정지, 도산 및 파산 등 사정변경으로 업무지원인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

⑤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제1유형: 업무보조형(중증장애경제인의 부수적 업무 지원)</li> <li>2. 제2유형: 의사소통형(중증장애경제인의 의사소통 지원)</li> <li>3. 제3유형: 경영지도형(중증장애경제인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업무 지원)</li> <li>4. 그 밖에 업무지원인 서비스 범위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li> </ol> <p>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 절차 등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</p>
<p>제11조의4(업무의 위탁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한다.</p>	<p>제11조의 4(업무의 위탁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법 제10조의3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업무</li> <li>2.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에 관한 업무</li> </ol>